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14.5)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 보조사업 범위(안 제4조)
 -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 마을창고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 정자 등 마을쉼터의 설치 및 개·보수 등

-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
-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집기류 등 비품구입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절차(안 제5조)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
 - 군수는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반환,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불가
 -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을 가짐

4. 의견제출

-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40-3381, FAX : (043)740-3369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생활 편의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주민생활편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보조사업) 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2. 마을창고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3. 정자 등 마을쉼터의 설치 및 개·보수 등

4.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

5.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집기류 등 비품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장·면장에게 사업타당성, 주민수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등재 및 등기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